

#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13 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월 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가. 주차환경개선지구(주차장 확보율 70% 미만) 내 주차면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 지원 기준, 교부절차 등 근거 마련
- 나.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다.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·개선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

- 1)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. 다만, 1면당 지원기준은 인근 노외 공영주차장 1면당 거주민 주차요금 범위 내로 함
- 2) 보조금 교부·정산 시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함
- 3)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 반환

#### 나.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보조금 지원

- 1)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 지원할 수 있음
- 2) 보조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범위 내에서 지원함

#### 다.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조정

- 1) 공영주차장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따른 주차요금 조정 범위를 50%에서 80%로 확대
- 2)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30% 할인 적용항목의 ‘1급지 제외’ 규정 삭제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주차관리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별관 2층 주차관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(전화 : 02-3396-6253, FAX : 02-3396-8869, E-mail : choiyj81@junggu.seoul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[붙임 1]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4호 중 “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”를 “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”로 한다.

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

제2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제24조제4호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설주차장 개방 시 안전에 필요한 옥외보안등, CCTV 등 방범시설 설치
2. 부설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시설 보수 등

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주차장 운영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 교부 신청·결정·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고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·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협약으로 정한다.

1. 주차장 운영 수익의 보전비용(인근 노외 공영주차장 1면당 거주민 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.)

2. 그 밖에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4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22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였을 때
3. 개방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
4.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또는 관련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
별표 1의 비교란의 제4호에 “**50%범위**”를 “**80%범위**”로 한다.

별표 1의 비교란의 제8의2호에 “(단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)”를 삭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<b>제24조(보조의 대상)</b> (생 략)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건축물부설주차장을 <u>야간에</u>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</p> <p>5. (신 설)</p>	<p><b>제24조(보조의 대상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</p> <p>5.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 주차장을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</p>
<p><b>제25조(보조의 방법)</b> ① (생 략)</p> <p>②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단, 제24조제4호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부설주차장 개방 시 안전에 필요한 옥외보안등, CCTV 등 방범시설 설치</p> <p>2. 부설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시설 보수</p>
<신 설>	<p>③ 주차장 운영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 교부 신청·결정·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고 개방부설주차장 이용·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협약으로 정한다.</p>

<신 설>

1. 주차장 운영 수익의 보전비용(인근 노외 공영주차장 1면당 거주민 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한다.)

2. 그 밖에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④ 제24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25조의2(보조의 반환) ① (생

1. ~ 2. (생 략)

② (생 략)

<신 설>

략)

#### 제25조의2(보조의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

2.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였을 때

3. 개방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 한 때

4.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또는 관련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
[별표 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

<비 고> 1. ~ 3. (생 략)  
4.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%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, 1급지 공영주차장 단체계약(50대 이상) 체결시에는 60%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5. ~ 8의 1. (생 략)  
8의2. 구청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 
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  
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급  
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30%를 할인해  
주어야 한다. (단 1급지에 소재한 공  
영주차장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.)

### [별표 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